

전국신학대학협의회 헌장

제 1 조 명 칭 :

본회는 전국신학대학협의회라 칭하고 그 영문 표기는 다음과 같다.
Korea Association of Accredited Theological Schools

제 2 조 목 적 :

본회는 한국에 있어서 신학연구를 증진하며 각 신학교육기관 상호간의 사업을 협조하고 신학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회원교의 자격과 의무 :

본회 회원교의 자격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교 : 국내신학대학 및 동등 또는 그 이상 수준의 신학교육기관
2. 준회원교 : 대학설치 기준령에 의한 각종 학교로서 신학교육기관
3. 제3조 1, 2항에 해당하는 가입신청 학교로서 임원회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자격이 인정된다. 단, 정회원교 중에서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하는 회원교는 준회원교로 회원교로의 자격은 유지하되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제한된다.
4. 본회 회원교는 매년 소정액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4 조 대의원 자격과 권리 :

1. 자격 : 본회 대의원은 제 3조에 해당하는 정·준회원교의 전임장사 이상으로서 총회에 파송된 자이다.
2. 권리 : ㉠ 본회 정회원교 대의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본회 준회원교 대의원은 선거권을 가지며 이사 및 임원회의 기획위원으로 피선될 수 있다.

제 5 조 이사회 :

1. 구성 : 협의회 이사회는 15명으로 구성하되 그 이사는 본 협의회 총회에서 회원교 학(교)장 중에서 선출하고, 한국신학교육기금(KTEF) 이사회에서 파송된 1명으로 한다. (단, 본 협의회 총무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2. 직무 : 이사회는 본 협의회 재산을 관리하고 총회 휴회 중 총회를 대행한다.
3. 임기 : 이사의 선출은 본 협의회 총회에서 실시하되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사의 임기는 4년이며 결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제 6 조 임원회 :

1. 구성 : 본 협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된 임원회를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3인, 총무 1인, 서기 1인, 회계 1인, 감사 2인
2. 직무 : 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총회 및 임원회를 소집하고 사회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본회를 대표한다.
㉢ 총무는 본회 이사회와 임원회의 결정사항을 추진·실행하며 본회를 위한 대·내·외 문서 연락의 책임을 진다. 그리고 총무는 한국신학교육연구원의 원장이 된다.

- ㉔ 서기는 본회의 각종 회의의 문서를 기록 보관한다.
- ㉕ 회계는 본회의 재정관계 사무일체를 장악하고 관리한다.
- ㉖ 감사는 본회의 모든 재정을 감사한다.

3. 선출과 임기 :

- ㉗ 임원선출은 총회에서 시행하는 투표로서 실시하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그 임기는 각 1년이고 (단, 총무의 임기는 3년) 회장은 윤번제로 한다.
- ㉘ 임원중 결원이 생길때 보선하여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계승케 한다.
- ㉙ 재임중의 임원이 해당학교를 이직하였을때 본 협의회 임원직을 사임해야 한다.

제 7 조 총 회 :

1. 본회 총회는 각 회원교에서 파송된 학(교)장을 포함한 3명 이내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열고 임시총회는 필요하면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본회의 총회는 회원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제 8 조 한국신학교육연구원 :

본 협의회는 신학교육의 갱신과 발전을 위한 연구기관으로서 “한국신학교육연구원”을 두고 그 규약은 별도로 정한다.

제 9 조 재 정 :

- ㉚ 본 협의회는 재정은 회비와 국내외의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 ㉛ 본회 재정의 효율적 찬조금 조달을 위하여 후원회를 두며, 그 규약은 별도로 정한다.

제 10 조 헌장개정 :

본회의 헌장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 11 조 창립회원교 :

감리교신학대학, 대전감리교신학대학, 서울신학대학, 삼육신학대학,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연합신학대학원, 성미가엘신학원, 장로회신학대학, 한국신학대학

제 12 조 발 효 :

- (1) 본 헌장은 1994년 2월 16일부터 개정 발효한다.
- (2) 본 헌장은 1997년 3월 21일부터 개정 발효한다.
- (3) 본 헌장은 2013년 3월 22일부터 개정 발효한다.